

2018. 12. 공표 버전



귀책사유에 따라 귀책 있는 법인, 기관, 단체, 연구자에게 제재조치 - 자기책임의 원칙

반대 해석하면 귀책사유 없는 법인, 기관, 연구자에게 제재조치는 위법

제재조치 결정기관에 상대방의 귀책사유 입증책임 있음

가.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, 단체, 기업, 연구책임자·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 중 위반행위에 귀책이 있는 자에게 제재조치 함

※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산업통상자원부,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귀책사유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

*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조 제1항

제48조(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)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**귀책사유에 따라**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, 단체, 기업 또는 총괄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 등에 대하여 [별표 4]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미 지급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. (생략)

*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4조 제1항

제44조(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)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**귀책사유에 따라**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, 단체,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"별표2"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. (생략)

*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9조 제1항

제29조(제재 등)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**귀책사유에 따라**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 (생략)

신규 법인 설립 시 - 법인격 구별 원칙, 신규 법인에 기존 법인의 제재조치 부과 불가

예외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-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하

여 신규 법인에 제재조치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

나. 기관·단체·기업/연구책임자·연구원·소속임직원에 따른 제재조치

- ① 제재조치 평가단이 구체적인 귀책사유를 판단하여 참여제한 기간, 대상, 환수여부 등 제재조치 내용을 정하며, 제재대상의 특성 및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참여기업, 연구자, 연구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음
- ② 귀책이 있는 기관단위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,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뿐만 아니라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참여제한 할 수 있음
 - 즉 법인의 경우 법인 전체를 참여제한 대상으로 할 것인지 해당 사업에 참여한 단위*를 참여제한 대상으로 할 것인지 검토해야함
 - * 독립된 법인격 없는 사업장, 지사, 산하 연구소 등이 협약상 수행기관이 된 경우로서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그 단위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를 참여제한 대상으로 할 수 있음
 - ※ 이는 제재처분을 받은 기관과 실제 동일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, 사업자등록번호를 달리하여 참여제한 효력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임
 -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나 제재처분을 받았던 기관 소속 연구책임자가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 혹은 실소유주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설립법인에 대해 참여제한 처분을 할 수는 없으나
 - 만약, 어떤 회사가 신규법인을 설립하면서, 이전 회사의 주요자산, 장비, 시설, 거래처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실상 형태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관을 설립한 경우라면 '법인격부인'의 법리에 따라 기존법인 대한 제재처분의 효력은 신규법인에 미칠 수 있음

보조금유용, 행정소송, 이의신청, 집행정지, 민형사소송, 법률자문, A~Z 수행경력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